<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654호 >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연장)

서울특별시에서는 역량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기업 2차 모집**

☐ **사업목적**

- ㅇ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직무적응력 향상
- ㅇ 전문 경력을 보유한 여성과 채용수요가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매칭, 기업에게는 2~3개월의 인건비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고용안정성 제고

☐ **신청자격: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유연근로(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중 1개 이상) 시행 기업**

※ 단, **프로젝트형**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가족친화인증기업 ②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③ 벤처기업

☐ **접수기간 : (당 초) 2025. 5. 8(목) ~ 5. 23(금) 18:00**

(연 장) 2025. 5. 8(목) ~ 6. 2(월) 18:00

☐ 모집규모 : 총 70개 기업 이상

☐ 모집유형별 세부내용

구분	프로젝트형	채용연계형
개념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한 유연근로 희망 구직여성 매칭	채용수요에 맞춘 경력보유 구직희망여성 매칭
근무지역	서울 소재 기업	서울 소재 기업
근무유형	유연근로(시차출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주 20~30시간	주 30~40시간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매칭 및 면접	7월	6~7월
인턴십 기간	8~10월(기간 중 **2개월**)	7~11월(기간 중 **3개월**)
비고	**유연근로제 시행 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인턴십 기간 : 인턴십 체결일로부터 2~3개월

☐ 추진과정 ※ 매칭 : 참여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와 참여자 경력 및 희망 직무 고려하여 배치

기업모집 ▸ 심사 및 선발 ▸ 매칭 ▸ 기업면접 ▸ 매칭 확정 ▸ 인턴십 시작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자격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공통)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중 1개 이상) 운영 기업에 한함**
- 인턴참여자 면접심사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우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우대(진입형 이상)**

(다음은 프로젝트형에 한함)
-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가족친화인증기업 ②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③ 벤처기업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소비 ·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근로자파견업체의 직접고용은 신청 가능)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및 직무(소비 향락업, 외근 영업직, 다단계 판매업, 배달업, 이·미용서비스, 조리, 서빙 등 단순서비스업) 참여 불가
  ※ 단,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인 사람을 인턴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지원내용

▢ 인턴 매칭

-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인턴 매칭

▢ 인턴십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779원)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지원하며, 참여 유형·근무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월 최대 2,461,811원(주 40시간 기준)**

  ※ 참여기업과 인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업부담금은 자체 부담해야 함

▢ 우먼업 고용장려금

-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혹은 상용직 전환 고용 후 3개월 만근 확인 시, '우먼업 고용장려금' 추가 지원(최대 300만원)

▢ 연계 프로그램

- 취업이음지원관 운영[기업 현장 컨설팅 및 참여자 상담 관리]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 참여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www.pointseoul.or.kr/)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우먼업 홈페이지 https://swup.seoulwomanup.or.kr)

☐ 근무유형 : 유연근로 운영 필수, 근무시간 구분하여 모집

근무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35시간 (일 7시간)	주 30시간 (일 6시간)	주 25시간 (일 5시간)	주 20시간 (일 4시간)	비고
유연근로제 (3유형 중 1개 선택)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단, 주 1회 이상 사무실 근무
		–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
휴게시간		일 1시간	4시간당 30분 필수				시급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금*	시급	11,779원					
	월급	2,461,811원	2,155,557원	1,849,303원	1,543,049원	1,236,795원	세전 급여

* 지원금은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원되며, 기업은 인턴 급여로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참고] 유연근로 유형

구분	유형	정의
근무형태	시간선택제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근무시간	시차출퇴근제	1일 근무시간내 출 · 퇴근시간 자율조정
근무장소	재택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단, 근무시작 후 1개월은 해당 기업(사무실)에서 근무

☐ 제출서류

구분	제출 목록	비고
필수	기업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참여기업 직무기술서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국세청 발급본)	파일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국세청 발급본)	파일첨부(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예: 900102-2******)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공고일 이후 국세청 발급본)	파일첨부
	중소기업확인서	파일첨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국세청 발급본)	파일첨부
	유연근로제 관련 사내 규정 문서 혹은 시행 증빙 문서	파일첨부
	기업 체크리스트 및 고용 환경 조사	양식: 붙임 참조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첨부)
해당기업	급여 체계 내부 규정 문서	파일첨부 (제출기업에 한해 심사시 반영)
	사원 평가 기준 내부 규정 문서	
	기업관련 인증서 *가점 인증 :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서울형),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하이서울기업,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인증	파일첨부

5 선정 방법

☐ 심사기준

○ 서류심사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턴 근무 수행 적합, 일자리 창출 기회여부 평가

○ 선정조건 : 합산 점수 70점 이상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100)	방법
1. 기업 기초평가 (25점)	참여필수 요건 부합		25	정량
	근로자 수			
	25년 신규 참여기업			
2. 참여자 업무 내용의 구체성 (15점)	직무 적절성 및 업무 내용 구체성		15	정성
3.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15점)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구체성		15	정성
4. 사업 목적성 부합 (45점)	유연 근로	유연 근로 운영 여부	10	정량
		인턴십 적용 유연근로제 (시차근무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중 1개 이상 적용)		
	일자리 창출 기여	인턴 연계 고용 계획	35	정량/정성
		채용시 직무 및 인턴 평가 방법		정성
		채용 시 급여(적절성)		정성
		2023, 24년도 서울우먼업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 기업		정량
5. 가점	*기업인증 (최대 5점 부여) 강소기업(고용노동부,서울형)1점 벤처기업 1점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1점 가족친화인증기업 1점 여가친화인증기업 1점 하이서울기업 1점		+5	정량

※ 우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인증 기업(진입형 이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우선선발

6 인건비 지급 및 부정 수급 관리

☐ 인건비 지급

ㅇ 지급방법

- 인턴의 급여는 기업의 급여일에 지급함 (급여 지급은 익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함)
-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에게 급여 선지급 후, **5일 이내** 우먼업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해 인건비 지원 신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단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15일 이내 인건비를 지급함
- 기업의 **4대보험 부담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업 자부담 필수)

ㅇ 지급절차 및 시기

절차		기업↔인턴	기업→여성가족재단 (우먼업 홈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기업
양식작성	인턴	• 근태확인서 • 업무일지	–		–
	기업	인턴 서류 검토 및 급여 지급	• 지원금신청(시스템) • 업무일지(시스템) **〈제출서류〉** • 급여명세서 • 송금확인증(입금확인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업 통장사본 • 근태확인서	제출서류 검토 및 인건비 지급 *필요시 재작성 및 재제출 요청	월 인건비 지급
시기		~급여일	급여일~5일이내	–	제출후 15일 이내

☐ 부정수급 관리

ㅇ 부정수급 기준

구분	위반 행위	제재조치
인위적 감원	–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지원금 부정수급	– 기존직원 인턴 채용 –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 인턴지원 협약 해지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
인턴관리	– 인턴교육 및 인턴 관리 미흡	– 1차 주의→2차 경고→3차 약정 해지
기타	– 인턴지원 협약 등 위반 – 운영기관의 지도 · 요구 불응 (이행서류 지연 또는 미제출, 임금 지연 지급 포함)	– 1차 경고→2차 약정 해지
※ 부정수급 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향후 우먼업 인턴십 참여 배제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제한 및 재참여 가능 사유

구분		세부내용
인턴십 참여제한		- 제한없음 (단, 부정수급 및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기업 참여 제한)
중도포기시 재참여 가능여부	기업의 법 위반·폐업시	- 해당기업 또는 동일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업은 향후 인턴십 참여 배제
	인턴의 타사 취업	- 기업 희망 시 잔여 기간 내 재매칭 가능(단, 연계 후 7일 이내 중도포기시)
기타		- 해당년도 매칭 실패 시 재참여 가능

☐ 그 밖의 유의사항

- ㅇ 기업의 대표(또는 인사담당자)는 인턴 채용면접 심사 시 참석해야 합니다.
- ㅇ 기업은 인턴의 교육, 세미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ㅇ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를 제한합니다.
- ㅇ 인턴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연계를 배제합니다.
- ㅇ 임금체불이 확인된 기업은 연계를 배제합니다.
- ㅇ 기업의 인턴십 참여 횟수는 제한 없으나, 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통해 매칭된 인턴을 1년 이상 연계 고용한 경우 차기 인턴십 참여시 선발 우대합니다.
- ㅇ 사업 선정 이후 인턴의 타사 입사를 제외하고 기업은 인턴십을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기업의 법 위반 및 폐업 또는 기업 개별 사유로 중도 포기 시 향후 동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ㅇ 인턴의 타사 입사 등 참여기업의 귀책없이 인턴십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재매칭 가능합니다. 단, 요건 일치 기업/인턴이 없을 시 사업연도 내 재매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 궁금하신 사항은 ▲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swup.seoulwomanup.or.kr/),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행기관) 대표전화 (☎1660-3040, 3번 기업,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채널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접수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www.pointseoul.or.kr/)

붙임 | 인턴십 참여기업 체크리스트 및 고용 환경 조사

*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에 ○ 표기.「아니오」응답 기업은 기업 심사에 반영 및 사업 참여 제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1. 체크리스트</th><th colspan="2">기업응답</th></tr>
<tr><th>예</th><th>아니오</th></tr>
<tr><td rowspan="3">기업 근무 환경</td><td>1. 당사의 인턴 근무 장소는 물리적,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으며 안전한 장소입니다.</td><td></td><td></td></tr>
<tr><td>2. 인턴의 근무를 위한 기업의 제공사항(좌석, PC/모니터, 비품 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턴에게 출근 근무시 개인 PC/노트북 준비/지참 요청하는 경우 인턴십 참여 불가)</td><td></td><td></td></tr>
<tr><td>3. 당사는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창구(담당부서/담당자) 및 관련 규정이 있으며, 인턴 참여자도 동일하게 관련 상담 창구 이용 및 관련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td><td></td><td></td></tr>
<tr><td rowspan="3">인턴 근무 조건 및 직무 확인</td><td>4. 당사는 다음의 유연근무제도를 알고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 기업 요건으로 최소 1개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운영 및 인턴에 적용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래 표 ■체크)
<table>
<tr><th>구분</th><th>근로시간단축제(주40시간 미만)</th><th>시차출퇴근제</th><th>재택근무제</th></tr>
<tr><td>제도 운영 여부</td><td>□운영 □미운영</td><td>□운영 □미운영</td><td>□운영 □미운영</td></tr>
<tr><td>내규 문서 여부</td><td colspan="3">□유 □무</td></tr>
<tr><td>인턴 적용 여부</td><td>□적용 □미적용</td><td>□적용 □미적용</td><td>□적용 □미적용</td></tr>
</table></td><td></td><td></td></tr>
<tr><td>5. 인턴의 근무 장소는 당사가 제출한 신청서상의 인턴의 근무지와 일치합니다.</td><td></td><td></td></tr>
<tr><td>6. 당사가 직무기술서에 작성한 인턴 담당 직무는 향후 당사에서 고용 연계가 가능한 직무로 부여되었으며, 인턴에게 약정된 근무시간내에 수행가능한 직무량, 난이도로 운영합니다. 또한, 인턴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td><td></td><td></td></tr>
<tr><td rowspan="2">인턴 지도 및 육성</td><td>7. 당사는 인턴십 직무기술서에 작성한 인턴 직무 지도교육계획[참여기업 선정 평가 및 심사 반영 항목]을 바탕으로 인턴에게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지도(OJT)를 성실히 실시 예정입니다.</td><td></td><td></td></tr>
<tr><td>8. 당사는 인턴십 직무기술서에 작성한 인턴의 지도자(상사, 선배, 멘토)는 인턴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갖고 있습니다.</td><td></td><td></td></tr>
<tr><td rowspan="4">사업 참여 제한</td><td>9. 인턴은 인턴십 시작일 이전에 당사에서 연수(인턴십 포함), 취업한 사실이 없습니다.</td><td></td><td></td></tr>
<tr><td>10. 인턴은 당사의 대표 및 경영진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가 아닙니다.</td><td></td><td></td></tr>
<tr><td>11. 당사는 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 및 임금 체불을 실시한 적 없으며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인턴 매칭 불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td><td></td><td></td></tr>
<tr><td>12. 당사의 사업 참여 제한 사유, 법 위반(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포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턴십은 자동 종료되며, 당사 및 동일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업이 향후 인턴십 참여시 배제 됨을 알고 있습니다.</td><td></td><td></td></tr>
<tr><td rowspan="6">참여 기업 의무</td><td>13. 당사는 인턴십 매칭이 완료되어도 인턴십 실시 전까지 이행서류(추후 인턴 매칭 완료 기업에 자료 별도 배포)를 사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턴십 참여 개시 및 참여 불가함을 알고 있습니다.</td><td></td><td></td></tr>
<tr><td>14. 당사는 인턴의 근무 시작일 즉시 4대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회사부담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함을 알고 있습니다.</td><td></td><td></td></tr>
<tr><td>15. 당사는 인턴 입사 당일 약정서 체결 및 오리엔테이션(회사소개, 근무 처우, 법정필수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td><td></td><td></td></tr>
<tr><td>16. 당사는 사업운영 기관이 실시하는 인턴 교육 및 미연계자 지원 프로그램에 인턴이 참여하도록 업무 조정에 협조하겠습니다.</td><td></td><td></td></tr>
<tr><td>17. 당사는 인턴십 지원금/고용장려금 수령 후 당사의 부정수급 또는 환수 대상 사실(인턴 고용연계 후 1년 이내 고용해지 등)이 확인될 시 사업운영 기관의 지원금 환수 요청에 협조하겠습니다.</td><td></td><td></td></tr>
</table>

구분	2. 고용 환경 조사	기업응답	
		예	아니오
고용 환경	1. 인턴십 종료 후 연계 고용 계획이 있습니까?		
	2. 귀사는 직원의 업무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2-1. 귀사는 인턴의 업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평가 후 인턴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3. 귀사는 급여 체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공고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귀사가 채용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명	
	4-1. 위의 채용 종류는? ① 신규 ② 후임 ③해당없음(미채용)		
	5. 귀사의 인턴십 참여 목적(해당 사항 모두 ■체크) □ 인건비 지원 혜택 □ 인력 부족 해소 □ 인력 채용의 어려움 해결 □신규 채용 전 자질 검증 □ 3개월 단기 업무 수행 인력 확보		

년 월 일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